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위험 공정의 설비개선 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감축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4. 4. 18.(목) 18:00 ([기간 연장](#))
- (지원대상) 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통해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확인서로 같음)

- (신청대상) 출연기업(원청)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지원내용) 중대재해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설비개선 자금지원
- (지원방법) 출연기업(원청)이 지원대상을 선정해 직접 신청

* 사업비 지급 방식 : 선지급(70% 지급 가능) 또는 사후정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당 지원 규모 협의 가능

□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하여 중대 재해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설비개선 자금지원

- 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정부 40%, 상생협력기금 40%~60%를 부담하여 사외하청의 위험공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동행 지원사업 (내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대기업·공공기관(원청)이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이외 비용은 중소기업 자부담)

*** 출연기업(원청) 부담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재단과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지원내용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제조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방법	출연기업(원청)이 컨소시엄(수행기관, 중소기업)을 구성해 직접 신청*		
매칭규모	정부재원 : 320억원(40%)		
	상생협력기금 40%~60%, 출연기업 320억원(40%) + 중소기업 160억원(20%)		
지원금액** (중소기업 당)	정부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40%(8천만원 이내)	+ 상생협력기금 (협력재단) 40%~60%	+ 중소기업 자부담 20%~0%

* 수혜대상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수행기관 중복신청 가능)

**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지원금액 : 1억원 이상 ~ 2억원 이하)

※ 과제 참여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필요(既 출연금 활용 가능),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재단 일반관리비 5% 별도 출연 필요

① (설비개선)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등 도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의 경우 지원 가능

** 원재료 등의 입·출고, 검사, 부대 공정 등 제조공정이 아니거나 중고·재생 기계·기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불가 사항>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② (원가검토)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 40%, 상생기금 40~6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및 원가정산비용 지원>

▶ **설비개선 완료 시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 선지급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 지원금 결정, 지원완료에 따른 지원금(정산) 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검토(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원금 최종 확정

* 결정금액, 실거래금액, 정산금액(원가정산 지원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

-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①실제 금액(부가세 제외)과 정산금액 구간에 따라 ②공단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지원금액	4천만원 미만	4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을 통해 최대한도(1억원)를 지원받은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 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한도(1억원)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사내 하청기업)
-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2.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제조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사내하청 제외)

* 해당 증빙자료는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로 같음

□ 선정 기준

- 사업장 위험도·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정부정책 부합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예비 선정(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최종 선정)

항목	A 사업장 위험도	B 산재보험 가입기간	C 정부정책 부합도	D 가점
배점(110점)	50점	30점	20점	10점
비고	부여되는 점수는 사업공고일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부여(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 사업장 위험도(50점): 산업안전 빅데이터·AI 분석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사업장 규모별 위험군(고·중·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구간별 편차 1점)

- ㉡ 산재보험 가입 기간(30점): 산재보험 성립 연월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5년 이하 6점(기본점수), 1개월마다 0.1점 부여(10년 이상 경과 시 2.5점 추가 부여)

- ㉢ 정부정책 부합도(20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 부합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위험성평가 인정(10점), 5인 미만(5점), 산단대개조 입주(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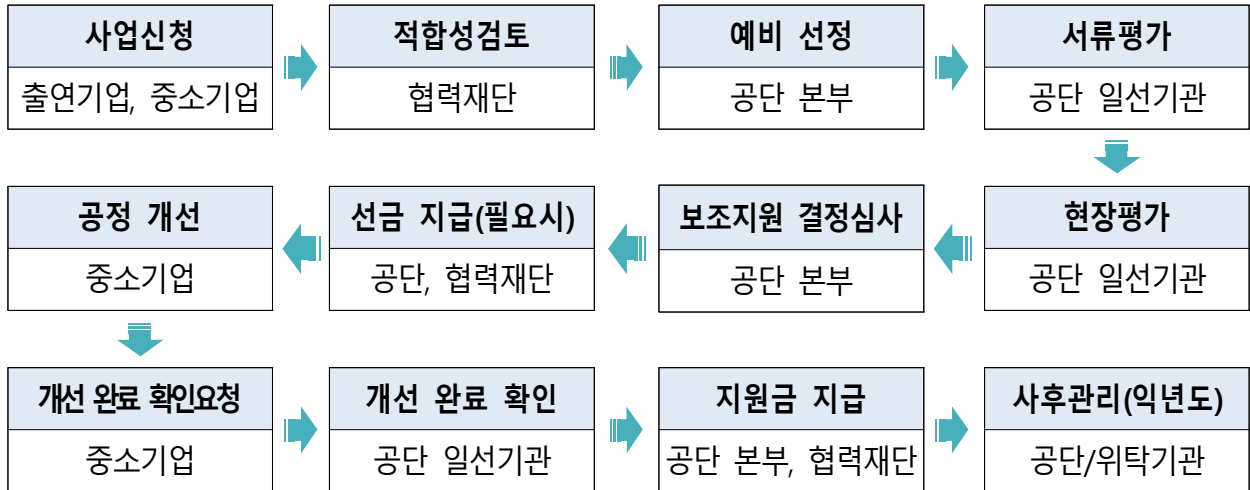
- ㉣ 가점(10점): 재정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 안전제품 도입 및 노후 기계(30년 이상 노후, '93년도 이전 생산) 퇴출 시 점수 부여

* 최초 신청(4점), KCs·S마크 인증품 도입(3점), 노후기계(프레스·전단기·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 6종(3점)

- ※ 예비선정 이후 서류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예비선정 취소 및 신청서 반려조치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출연기업, 중소기업)

- (출연기업) 수혜 대상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https://fund.win-win.or.kr>) 통해 신청·접수

* 과제 신청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필요(既 출연금 활용 가능), 일반관리비 5% 별도

- (중소기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회원 가입(회원구분 '신청 사업장') 및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출연기업 취합, 일괄 제출)

* (사업신청서)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

② 적합성 검토(협력재단)

- 출연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 요건검토(중소기업여부, 기금 사용 용도 및 과제 적합성 등)를 통해 기금지원 결정

* 요건검토를 통해 기금 지원여부 결정, 신청·접수된 서류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관

③ 예비선정(공단 본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
 - * 단,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시 부여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④ 서류 평가(공단 일선기관)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여부 확인
 - 신청자격 비해당, 서류 미첨부,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 사항>

-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
 - * (예시) 용접에 대한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또는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인증 비대상품 신청 등
-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⑤ 현장 평가(공단 일선기관)

- 신청서의 소재지(중소기업)에 방문하여 공정개선 적정성 등 확인
 -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 이력이 있는지, 개선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

<현장평가 부적합 사항>

- ▶ 신청한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시 확인한 장소가 다른 경우
- ▶ 사업 신청 내용(또는 사업계획서)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⑥ 지원금 결정심사(공단 본부)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⑦ 선금 지급(협력재단, 공단본부)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금액의 70% 신청 가능(중소기업)
 -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결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 중소기업 사업주(법인은 법인명) 통장사본 및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
- * 결정 통보 이후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과제 변경 이후 선금 지급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협력재단 및 산업안정보건공단에서 각각 지급

⑧ 공정 개선(중소기업)

-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개선 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선 완료 전까지 변경 신청·승인 필요(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 *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 등 안정성 문제로 제작·판매업체와 AS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보험 등의 제도 활용 권장

⑨ 개선완료 확인요청(중소기업)

- 기계·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개선완료기간 내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청
 - * 지급보증보험증권, 원가검토(정산)보고서 등 개선완료서류 확인 필요
- (원청 지원내역) 원청 또는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⑩ 개선완료 확인(공단)

-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개선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참여제한 포함)가 될 수 있음
 - * 개선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⑪ 지원금 지급(협력재단, 공단본부)

- 개선이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개선 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정산)
 - * 협력재단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⑫ 사후관리(공단)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설비개선 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차 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참고

추진 단계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단 계	과제신청	과제변경	지급(선지급)	지급(정산)	사후 기술지도
과제(변경)신청서		●	●			필요시
선지급 신청서				●		
결과보고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	●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⑤원가검토보고서 1부					●	
⑥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안전인증·자율신고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		●	
⑦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⑧원청의 지원내역 증명 1부 (원청직접·기금운영기관 지원 분야에 한함)					●	
⑧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① 동의서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같음
- ② 수행기관(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 ③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④ 출연기업(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의 양식 참조
- ⑤ 공인된 원가검토(정산)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작성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⑥ 선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⑦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⑧ 원청 지원내역(통장거래내역 또는 기금입금내역) 제출(원청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증명 불인정)
- ⑨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지원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출연기업은 추진 단계별 필요 서류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https://fundwin-wincr.kr>)에 제출
* 지원기업은 과제 신청이후 필요서류를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제출

4. 참여혜택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법인세공제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협력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해당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 임금증가 등의 공제항목에 해당	총 출연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세제혜택

+

평가반영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평가점수 부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시 점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금지원 중 '특별지원'에 해당
안전 재해 분야 지원 시 생산성 향상 지표(3점) 지원 실적 2배 인정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표 비계량 지표(12점)에 참고사항(지원 예시)로 반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기금출연 실적 인정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사업 참여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 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 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 환수 시 지급 지원금 전액과 사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지급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지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지원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⑦ 지원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조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공단 지원금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상생기금부	강건영 차장	02-368-8971	kky@win-win.or.kr
	정주호 대리	02-368-8489	jeongjh@win-win.or.kr